

[별지 제8호 서식] <개정 2022. 4. 21.>

〈앞면〉

[illegible]

〈뒷 면〉

(작성요령)

1. ① 신고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2. ⑧ 장소 표시는 행정주소로 표시하거나 장소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이정표(예:00육교, 00빌딩 등)로 표시하여야 합니다.
3. ⑭ 차량, 건설기계 또는 원동기 등 번호판이 있는 이동수단의 경우 번호판 또는 등록번호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.
4. ⑯ 신고내용의 해당란에 체크 (☑) 하시기 바랍니다.
5. ⑰ 세부 신고내용에는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,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증거물은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7. 입증자료는 위반일시, 위반장소, 위반행위자, 위반행위 내용(폐기물의 양, 내용물 등)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.